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국환경공단의 명칭을 한국기후환경공단으로 변경 등〉

■ 임의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689)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한국환경공단의 명칭을 한국기후환경공단으로 변경 등	2

I. 제안경위

2024년 10월 15일 임의자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는 인간과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음. 특히, 대한민국은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 관리와 저감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한국환경공단’ 명칭을 ‘한국기후환경공단’으로 변경하고,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시장에 관한 정책지원을 사업 범위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17조).

Ⅲ. 검토의견

1. 한국환경공단의 명칭을 한국기후환경공단으로 변경 등

개정안은 한국환경공단의 명칭을 한국기후환경공단으로 변경하면서, 동법의 제명을 아울러 변경하고, 설립 목적에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사업 수행을 명시하며,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내용을 추가하고, 한국기후환경공단의 사업 범위에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시장 정책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및 제17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한국환경공단법</u>	<u>한국기후환경공단법</u>
제1조(목적) 이 법은 <u>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u>한국기후환경공단을 설립하여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사업을 수행하고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등 -----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친화적 -----.</u>
제2조(법인격) <u>한국환경공단</u> (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제2조(법인격) <u>한국기후환경공단</u> -----

한다. 제17조(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u><신 설></u> 1. ~ 11. (생략) 12.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정책지원 사업 14. ~ 25. (생략) ②·③ (생략)	-. 제17조(사업) ① ----- -----. 1의2. 배출권 거래시장 등 국내 탄소시장의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한 정책지원 사업 2. ~ 12. (현행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1. ----- - 감축사업, 기후위기 적응사업 ----- ----- 14. ~ 2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특수법인으로, 현행법 제1조1)에서는 공단의 설립 목적을, 제2조에서는 공단의 법인격을, 제17조2)에서 공단의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

- 1)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법 제17조(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촉진을 통한 자원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정책의 연구, 개발 및 지원
 2. 재활용 가능자원 관련 물류시설, 폐기물에너지화시설, 폐기물재활용단지 및 연구시설 등 환경복합시설의 설치·운영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시설(이하 “환경시설”이라 한다)의 점검·진단·검사·설치·운영 및 기술지원
 4. 환경산업의 육성, 환경시설의 설치, 환경기술의 개발 등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5. 폐기물의 발생 억제, 부산물·폐기물의 순환이용(재사용·재생이용·재활용 등을 말한다),

음.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를 뒷받침할 공단의 사업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공단의 사명을 “한국기후환경공단”으로 변경하고, 공단의 설립 목적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3)의 취지를 반영하여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온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사업

6. 대기·수질·소음·실내공기질 등을 측정하기 위한 환경측정망 및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7. 토양·지하수 환경의 조사·평가·검증·인증·정화 사업 및 관리
8. 환경유해인자(화학물질을 포함한다)의 검사·분석, 유해성시험, 위해성평가 및 관리
9. 환경 관련 국제협약 대응 및 환경시설 설치·운영 등 국제협력사업
10. 수변구역 매수토지관리·생태복원, 비점오염원 관리·물순환 및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설치
11. 재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재활용제품의 수요촉진,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및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의 지원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사업
12.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정책지원 사업
13. 삭제
14.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운영
1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환경분야 사업의 평가·협상, 총사업비 검증 및 이에 수반되는 공사비와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 지원.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6. 석면안전관리 사업
17. 환경보건 정책지원 사업
1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수·물수한 물품의 운송·보관, 폐기·자원화 및 공매
19. 환경분야 지식·정보수집,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및 각급 기관에 대한 지원
20. 공익상 그 수행이 필요하거나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20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신청서류등의 기술검토 및 통합관리사업장 배출시설등에 대한 기술지원
- 20의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 20의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 검토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조사·측량, 시험·연구, 통계관리, 정보화, 기술용역, 설계 및 공사의 관리·감독·감리
22. 환경오염방지 및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에 관한 대국민홍보 및 교육
2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24.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25. 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사업 수행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명시하며, 공단의 사업 범위에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시장에 관한 정책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공단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시장 정책 지원에 있어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음.

공단은 배출권거래제 적응업체가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업무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공단의 사업범위에 배출권 거래시장 등 국내 탄소시장의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한 정책지원 사업과 기후위기 적응 사업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질 경우 관련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단의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 및 기후위기 적응 관련 주요 사업 현황]

구분	2025년 예산	내용
배출권 거래제 및 배출권 관리 등	45억 4,800만원	○ 배출권의 할당·조정·취소, 배출량 인증, 배출량 산정계 획서 검토 및 지원 ○ 할당업체별 배출권을 할당, 온실가스 배출량 정산, 배 출권 시장의 거래동향 분석, 수급 및 가격 안정화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분	2025년 예산	내용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 사업	1,079억원	○ 배출권거래제 참여 전 업종을 대상으로 투자회수기간 3년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비용 지원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55억 600만원	○ 공공부문 대상기관의 감축목표 및 이행실적 검토 및 평가, 온실가스 감축 이행지원(교육 및 맞춤형 기술지원) 등
탄소중립포인트 제 운영	178억 4,100만원	○ 국민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유도하는 대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실시 - 가정(상업) 부문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 실적, 차량 주행거리 등을 고려한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자료: 한국환경공단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환경공단이 기후대응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관이 아니고, 기관 명칭 변경은 표식, 지리정보의 수정 등 행정비용을 수반하므로 공단의 명칭에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개념인 기후를 추가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환경부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개정안 제17조의 사업범위를 고려할 때 기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각 기관들의 역할에 영향을 줄 소지가 없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문 의 처
6788-5533